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호 1063 제출연월일 : 2024. 6. 27.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주식매매대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뿐 아니라 주주로서 배당금도 배당받게 되는 체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며, 회사가 주식매매대금을 공탁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가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식의 양도승인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행사 규정 정비(안 제335조의6제4항, 안 제360조의24제10항·제360조의25 제6항 신설)

주식의 양도승인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및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경우 회사

나 지배주주는 매수가액 또는 매매가액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그 가액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에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하도록 함.

- 나.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주주동의 방식의 명확화(안 제363조제1항)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주주 동의 방식을 구체화함.
- 다.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전자주주총회 도입(안 제364조의2, 제368조의5 및 제368조의6 신설)
 - 1) 회사는 정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주주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 방식 또는 주주가 소집지에 출석하거나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하는 방식 중 선택하여 출석할 수 있는 병행 전자주주총회 방식으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2) 전자주주총회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전자주주총회 운영과 주주의 전자주주총회 출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통신의 장애 등 기술적인 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하자 발생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라.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규정 정비(안 제368조제2항, 안 제368조제4항 신설)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대리하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주주총회나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마. 서면 및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규정 정비(안 제368조의3제 1항 및 제368조의4제1항)

종전에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 및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 정비(안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 제374조의2제6항 신설)
 - 1) 회사의 영업양도나 양수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가 해당 영업양도나 양수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까지 주주총회 소집 시 명시한 매수가액을 전부 지급하여야 주식매 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2) 회사는 매수가액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명시한 매수가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에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함.
- 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안 제530조의12)

회사의 분할 중 분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총자산액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전의 분할회사의 총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5조의5의 조 번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5조의5

제335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주주 또는 매도청구인은 제335조의4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매도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법원이 제2항에 따라 주식의 매도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한다.

제335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35조의6(주식의 매수청구) ① 회사는 제335조의2제4항에 따라 주주 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 ③ 제1항의 주식 매수에 관하여는 제335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주주가 주장하는 매수가액 중 일부를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고, 주주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에도 불구하고 공탁할 수 있다.이 경우 회사는 지급하거나 공탁한 범위에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제360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사는 제363조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60조의3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60조의5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그 행사방법 및 주식의 매수가액과 그 산정 근거

제360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 ⑤ 회사는 제4항제2호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 산정 근거에 관한 자료와 매수가액의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를 주주총회일 2주일 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⑥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5항에 따라 비치된 자료를 열람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60조의5제3항 중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제374조 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제374조의2제2항 본문 중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주식교환의 날"로 본다.
- 제360조의9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주식교환에 관하여는 제52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27조의2제3항 중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로 본다.

제360조의2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60조의22(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주식이전에 관하여는 제360조의5, 제360조의11, 제360조의12, 제374조제3항·제4항 및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74조제3항 중 "제1항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및 제374조의2제2항 본문 중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각각 "제360조의21에서 정한 등기일"로 본다.
- 제360조의24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지배주주는 제8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제4항에 따른 매매가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고, 소수주주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에도 불구

하고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배주주는 지급하거나 공탁한 범위에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 ① 지배주주는 제4항제3호의 자료를 주주총회일 2주일 전부터 2개월 간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소수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1항에 따라 비치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복사를 청구할 수 있 다.

제360조의25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배주주는 제4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소수주 주가 주장하는 매매가액 중 일부를 소수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고, 소수주주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에도 불구하고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배주주는 지급하거나 공탁한 범위에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제363조제1항 본문 중 "각 주주의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각 주주의 동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통지가"를 "서면으로 발송한 통지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 주주의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각 주주의 동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을 "제522조의3, 제530조의11 또는 제530조의12"로 한다.

제3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제3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64조의2(전자통신수단에 의한 주주총회) ① 회사는 제364조제2항에 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제364조제2항의 방식과 제1호의 방식을 모두 배제하도록 정할 수 없다.
 - 1. 병행전자주주총회 방식: 주주가 그 선택에 따라 소집지에 직접 출석 하거나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할 수 있는 방식
 - 2. 완전전자주주총회 방식: 주주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으로만 출석할 수 있는 방식
 - ② 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개최된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68조의3제1항 또는 제368조의4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68조의3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주는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68조의4제1항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을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368조의5 및 제368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68조의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회사는 제3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전자주주총회에서 전자통신의 장애 등 기술적인 사유로 의결권 행

사 또는 의사 진행 등 결의방법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376조제1 항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결의방법 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전자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 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 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제5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⑦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6항에 따라 비치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 8 주주의 질의 방법·절차 및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8조의6(주주의 전자주주총회 출석과 의결권의 행사 등) ① 회사가 병행전자주주총회 방식으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 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하는 방식 중 어

- 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 ② 주주는 전자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주주의 대리인이 병행전자주주총회 방식으로 개최된 전자주주총회에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3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72조(총회의 속행 및 연기 등) ① 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속행된 총회 또는 연기된 총회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된 총회와 다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전자주주총회에서 전자통신의 장애 등 기술적인 사유로 의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나 의장의 직권으로 회의를 속행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 ③ 주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속행되거나 연기되는 경우 제363조에 따라 소집된 총회에 출석했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속행된 총회 또는 연기된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제36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제37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사록에는 총회의 개최방식 및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7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및 임대 등)

제37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 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그 행사방법 및 주식의 매수가액과 그 산정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 산정 근거에 관한 자료와 매수가액의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를 주주총회일 2주일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이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④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3항에 따라 비치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는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효력발생일"이라 한다)에 효력이 발생한 다. 다만,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주주(이하 이 조에서 "반대주주" 라 한다)에게 제374조제2항에 따라 명시한 매수가액(이하 이 조에서

"명시가액"이라 한다) 전부를 지급(반대주주가 해당 매수가액을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487조에도 불구하고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가 효력발생일까지 명시가액의 전부를 반대주주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반대주주는 효력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원이 결정한 매수가액이 명시가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 및 차액에 대한 효력발생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반대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④ 반대주주 또는 회사는 회사가 효력발생일까지 명시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대주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법원이 결정한 매수가액및 이에 대한 효력발생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반대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명시가액 또는그 이상의 금액을 공탁하여 그 범위에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할수 있다.

제374조의2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주식의 매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민법」 제48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제374조의3제3항 후단 중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회사는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할 때 제3항에 따른 주식매수청 구권의 내용과 그 행사방법 및 주식의 매수가액과 그 산정 근거를 명 시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하는 회사는 제4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 산정 근거에 관한 자료와 매수가액의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를 영업양도, 양수 또는 임대 등의 계약서 작성일부터 제374조의2제2항의 효력발생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⑥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5항에 따라 비치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22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의 매수청구에는 제3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74조의2의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의 매수청구에는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374조제3항중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및 제374조의2제2항본문 중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각각 "합병등기일"로 본다.

제527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27조의2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할 때 제522조의3제2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그 행사방법 및 주식의 매수가액과 그 산정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하는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 산정 근거에 관한 자료와 매수가액의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를 합병계약서 작성일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⑤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4항에 따라 비치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3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0조(준용규정)

제5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234조, 제235조, 제237조부터 제240 조까지, 제329조의2 및 제43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530조의11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0조의11(준용규정)

제530조의11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

제530조의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30조의12(물적 분할) ① 분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준 용한다.
 - ② 제1항의 분할 중 분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총자산액(분할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에 따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전의 분할회사의 총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22조의3 및 제52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74조제3항 및 제374조의2제2항을 준용하는 제522조의3제3항 후단에 따른 "합병등기일"은 각각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일"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회사의 변경등기일"로 본다.

제625조의2제2호 중 "제360조의3제7항"을 "제360조의3제9항"으로 한다. 제63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5조(과태료)

제635조제1항제23호 중 "제530조제2항"을 "제522조의3제3항, 제527조의 2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절차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5조의6제4

항 및 제360조의25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주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60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60조의5제3항, 제360조의9제3항, 제360조의22, 제360조의24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363조제7항단서, 제3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374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522조의3제3항, 제52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30조의21제2항 및 제530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주총회(주식의 매수청구 또는 매도청구에 관한 사항이 통지된 주주총회를 말한다)를 소집하는 경우(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개 정 아 第335條의5(매도가액의 결정) ① 제335조의5(매도가액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생 략) ②제37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② 주주 또는 매도청구인은 제 규정은 제335조의4제1항의 규 335조의4제1항에 따른 청구를 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 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하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매도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제2항에 따라 주식의 <신 설> 매도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 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第335條의6(株式의 買受請求) 제 제335조의6(주식의 매수청구) ① 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規 회사는 제335조의2제4항에 따 定은 第335條의2第4項의 規定 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 에 의하여 株主가 會社에 대하 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그 청구 여 株式의 買受를 請求한 경우 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에 이를 準用한다.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 액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주식 매수에 관하여 는 제335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 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 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 의 특칙) ① ~ ③ (생 략) 한 통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제36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3. (생략) <신 설>

준용한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주주가 주장하는 매수가액 중 일부를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고, 주주 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는 「민법」 제487조에도 불구 하고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지급하거나 공탁한 범위 에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 한다.

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 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 의 특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회사는 제363조의 규정에 의 | ④회사는 제363조에 따른 통지 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현행과 같음)
- 2. 제360조의5제1항에 따른 주 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그 행 사방법 및 주식의 매수가액과 그 산정 근거
- 3. (현행과 같음)
- ⑤ 회사는 제4항제2호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 산정 근거에

<신 설>

⑤·⑥ (생 략)

⑦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제6항에 따라 취득한 그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주식교환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 교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 여야 하다.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①・②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매수청구에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후 | 단 신설>

관한 자료와 매수가액의 적정성 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를 주주총회일 2주일 전부터 주 식교환의 날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 다.

- ⑥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 든지 제5항에 따라 비치된 자료 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 한 비용을 지급하고 복사를 청 구할 수 있다.
- ⑦·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9	 	
<u> 제8항</u> -	 	

청구권) ①·② (현행과 같음) 관하여는 제374조의2제2항 내지 -----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이 경우 제374조의2제2항 본문 중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① · ② (생 략) <신 설>

제360조의22(주식교환 규정의 준제360조의22(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5, 제360조의11용) 주식이전에 관하여는 제360및 제360조의12의 규정은 주식조의5, 제360조의11, 제360조의이전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12, 제374조제3항・제4항 및 제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 구권) ① ~ ⑨ (생 략) 구권) ① ~ ⑨ (현행과 같음)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의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주식교환의 날"로 본다.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주식교환에 관하여는 제52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27조의2제3항중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회사"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로 본다.

제360조의22(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주식이전에 관하여는 제360조의5, 제360조의11, 제360조의12, 제374조제3항·제4항 및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74조제3항 중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및 제374조의2제2항 본문 중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각각 "제360조의21에서 정한 등기일"로 본다.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_설>

<신 설>

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 구권) ① ~ ⑤ (생 략) <신 설> ① 지배주주는 제8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제4항에 따른 매매가액 또는 그이상의 금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고, 소수주주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에도 불구하고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배주주는 지급하거나 공탁한 범위에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① 지배주주는 제4항제3호의 자료를 주주총회일 2주일 전부터 2개월간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소수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1항에 따라 비치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 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복사 를 청구할 수 있다.

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 구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배주주는 제4항에 따른 법 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소수주주가 주장하는 매매가액 중 일부를 소수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고, 소수주주가 그 수령을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 지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u>각 주주의 동의</u>를 받아 전자문서로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아니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 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 거나 <u>각 주주의 동의</u>를 받아 전 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 다.
- ④ ~ ⑥ (생 략)

487조에도 불구하고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배주주는 지급
하거나 공탁한 범위에서 지연손
해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각 주
<u>주의 동의</u>
서면으로 발송한 통지가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각 주주의 동의
④ ~ ⑥ (현행과 같음)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第364條(召集地) 總會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 없으면 本店所在地 또는 이에 隣接한 地에 召集하 여야 한다.

<신 설>

(A)
<u>제522조의3, 제530조</u>
의11 또는 제530조의12

-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 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 제364조의2(전자통신수단에 의한 주주총회) ① 회사는 제364조제 2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 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제364조 제2항의 방식과 제1호의 방식을 모두 배제하도록 정할 수 없다. 1. 병행전자주주총회 방식: 주주

第368條(總會의 決議方法과 議決 權의 행사) ① (생 략) 議決權을 行使하게 할 수 있다.

가 그 선택에 따라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자통신수 단으로 출석할 수 있는 방식 2. 완전전자주주총회 방식: 주주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으로만 출 석할 수 있는 방식

② 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개 최된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 라 한다)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 하기 위하여 제363조제1항에 따 른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 전자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 석방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통지하 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전자 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 권의 행사) ① (현행과 같음) ②株主는 代理人으로 하여금 그 |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 權을 證明하는 書面을 總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 설>

第368條의3(書面에 의한 議決權의 행사) ①株主는 定款이 정한 바 에 따라 總會에 출석하지 아니 하고 書面에 의하여 議決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 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 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 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신 설>

이 境遇에는 그 代理人은 代理 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 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를 총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368조의3제1항 또는 제368 조의4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 사한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이사회의 결의 로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의결권의 행사) ① -----

--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68조의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 등) ① 회사는 제364조의2제1항 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 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 진 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 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전자주주총회에서 전자통신의 장애 등 기술적인 사유로 의결권 행사 또는 의사 진행 등결의방법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376조제1항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고의또는 중과실로 결의방법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전자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 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 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 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

<신 설>

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 ⑤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 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제5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 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 든지 제6항에 따라 비치된 기록 을 열람할 수 있다.
- ⑧ 주주의 질의 방법·절차 및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8조의6(주주의 전자주주총회 출석과 의결권의 행사 등) ① 회사가 병행전자주주총회 방식 으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 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으 로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하나 의 방식으로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 ② 주주는 전자주주총회에서 의 결권을 행사할 때 주주 확인절 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 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 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주주의 대리인이 병 행전자주주총회 방식으로 개최 된 전자주주총회에 전자통신수 단으로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372조(총회의 속행 및 연기 등)
① 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속행된 총회 또는 연기
된 총회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
된 총회와 다른 방식으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전자주주총회에서 전자통신의 장애 등 기술적인 사유로 의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나 의장의 직권으로 회의를 속행하거나 연

<u>第373條(總會의 議事錄)</u> ① (생략)

②議事錄에는 議事의 經過要領 과 그 結果를 記載하고 議長과 出席한 理事가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第374條(營業讓渡,讓受,賃貸等)

 ①(생 략)

②第1項의 행위에 관한 株主總會의 召集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第374條의2第1項 및 第2項의規定에 의한 株式買受請求權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한다.

기할 수 있다.

③ 주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속행되거나 연기되는 경우 제363조에 따라 소집된 총회에 출석했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속행된 총회 또는 연기된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제36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u>제373조(총회의 의사록)</u> ① (현행 과 같음)

② 의사록에는 총회의 개최방식 및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 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 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u>제374조(영업양도, 양수 및 임대</u> <u>등)</u>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 회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그 행사방법 및 주식의 매수가액과 그 산정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 다. <신 설>

<신 설>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① (생 략)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 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 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 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 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 산정 근거에 관한 자 료와 매수가액의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를 주주총 회일 2주일 전부터 제1항 각 호 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이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 든지 제3항에 따라 비치된 자료 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 한 비용을 지급하고 복사를 청 구할 수 있다.

청구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는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하 이 조 에서 "효력발생일"이라 한다)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주주(이하 이 조에서 "반대주주"라 한다) 에게 제374조제2항에 따라 명시 한 매수가액(이하 이 조에서 "명시가액"이라 한다) 전부를 지급(반대주주가 해당 매수가액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株式의 買受價額은 株主와 會社間의 協 議에 의하여 決定한다.

④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을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487조 에도 불구하고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가 효력발생일까지 명시 가액의 전부를 반대주주에게 지 급한 경우에도 반대주주는 효력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 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원이 결정한 매수가액이 명시 가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 및 차액에 대한 효력발생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반대주주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④ 반대주주 또는 회사는 회사 가 효력발생일까지 명시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대주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 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법 원이 결정한 매수가액 및 이에 대한 효력발생일부터의 지연손 해금을 반대주주에게 지급하여 ⑤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374조의3(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①·② (생 략)

③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양 수, 임대 등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야 한다. 다만, 회사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명시가
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공탁
하여 그 범위에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u>따라</u>
⑥ 제2항에 따라 주식의 매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민
법」 제489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회사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제374조의3(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있다. 이 경우 제374조의2제2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매수청구권) ① · ② (생 략)

----. ---- 제374조의2제2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④ 회사는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할 때 제3항에 따른 주 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그 행사 방법 및 주식의 매수가액과 그 산정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하는 회사는 제4항에 따른 주식 의 매수가액 산정 근거에 관한 자료와 매수가액의 적정성에 관 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를 영 업양도, 양수 또는 임대 등의 계 약서 작성일부터 제374조의2제 2항의 효력발생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 든지 제5항에 따라 비치된 자료 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 한 비용을 지급하고 복사를 청 구할 수 있다.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 매수청구권) ① · ② (현행과 같 음)

<신 설>

<u>第527條의2(簡易合倂)</u> ①・②(생략)

<신 설>

<신 설>

- ③ 제1항의 매수청구에는 제374 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 374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의 규정을, 제2항의 매수청구에 는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374조제3항 중 "제1 항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 하는 날" 및 제374조의2제2항 본문 중 "제374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각각 "합병등기일"로 본다.
- 제527조의2(간이합병) ①·② (현 행과 같음)
 - ③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할 때 제522조의3제2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그행사방법 및 주식의 매수가액과 그 산정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하는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주식 의 매수가액 산정 근거에 관한 자료와 매수가액의 적정성에 관 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를 합

<신 설>

第530條(準用規定)① 削除

②第234條, 第235條, 第237條 내 지 第240條, 第329條의2, 第374 條第2項,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第439條第3項의 規定 은 株式會社의 合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③ • 4 (생 략)

②第374條第2項,第439條第3項, 第522條의3. 第527條의2. 第527 條의3 및 第527條의5의 規定은 | 分割合倂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 다.

第530條의12(物的 分割) 이 節의 規定은 分割되는 會社가 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하여 設立

병계약서 작성일부터 합병등기 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 든지 제4항에 따라 비치된 자료 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 한 비용을 지급하고 복사를 청 구할 수 있다.

제530조(준용규정)

②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234조, 제235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및 제 439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第530條의11(準用規定) ① (생 략) | 제530조의11(준용규정) ① (현행 과 같음)

> ②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39 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 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 를 준용한다.

제530조의12(물적 분할) ① 분할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되는 會社의 株式의 總數를 취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득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분할 중 분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총자산액(분할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에 따른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할 또 는 분할합병 이전의 분할회사의 총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제522조의3 및 제52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 374조제3항 및 제374조의2제2 항을 준용하는 제522조의3제3 항 후단에 따른 "합병등기일" 은 각각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 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 립등기일"이나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회사의 변경등기일" 로 본다.

제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2. 제360조의3제7항을 위반한 자

제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

- 1. (현행과 같음)
- 2. 제360조의3제9항-----

3. • 4. (생략) 第635條(過怠料에 處할 行爲) ① |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 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 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 298조제3항 • 제299조의2 • 제310 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제310조제 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 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 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 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 조제2항 • 제407조제1항 • 제415 조 · 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 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 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2. (생 략) 23. 제374조제2항, 제530조제2 항 또는 제53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3. • 4. (연행과 같음)
제635조(과태료) ①
1. ~ 22. (현행과 같음)
23 <u>제522</u> 조의3
<u>제3항, 제527조의2제3항</u>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4. ~ 32. (생 략) ② ~ ④ (생 략)

24. ~ 3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